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알림

1. 관련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등)
- 나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(안전보건교육의 면제), 제95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등)

2.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부터 '노무를 제공받는 자'는 '최초 노무제공 시' 교육을 실시(시행규칙 별표4, 별표5)*하여야 합니다.

* 구체적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(정책자료실-3733. '건설기계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') 참조

3.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'최초 노무제공 시' 교육은 노무제공 시간과 노무제공 자의 경력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할 교육시간이 2시간 분량 또는 1시간·30분·면제 등 다양함에도, 2시간 분량의 인터넷 원격교육 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,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면허 취득일자, 보험가입 이력, 작업 예정기간 등을 확인 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, 전국 건설현장 및 협력업체·회원사에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100대 건설사 대표, 대한건설협회 대표,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

보건의사무관 이동규 산업안전과장 고광훈 전결 2020. 4. 28.

협조자

시행 산업안전과-1907 (2020. 5. 6.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고용노동부, 산업안전과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7724 팩스번호 044-202-8090 / dong8717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"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